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3. 20.> sunwoo accounting ju hwang-kyu.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 적용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3. 20.> sunwoo accounting ju hwang-kyu.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자산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7년	특허권 [2015.3.13. 이후 특허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前은 10년]
3	10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4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	50년	댐사용권

Q 개발비를 20년 이내 신고하면 정액법으로 월할상각

개발비의 무신고시 법인세 책을 보니 균등상각법(5년 동안)

위의 얘기는 예를 들어 개발비(무형자산금액이 500백만원이고) 개발비상각 요건이 충족되는 월이 2013년 12월이라고 가정하고,

무신고일경우 2013년도에 100백만원을 상각하는 방법인지요?

또한 만약 5년으로 선택시는 정액법 월할상각을 하는지요?

A 신규 취득한 자산은 신규로 취득한 자산의 사용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수를 12월로 나누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며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을 무신고하였을 경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2013년 12월에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였다면 $500\text{백만원} \times 1/60$ 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법위액의 계산】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5년 3년

비고

-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이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4.1.1. 부터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변경]

2014.1.1 이후 취득하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11개 업종에 대해 변경하는 바
미리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2013.12.31.까지 종전[年]	업 종	2014.1.1.이후 개정[年]
5년	교육서비스업	4년
5년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10년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8년	통신업	6년
5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년	부동산업	8년
5년	종합건설업	
5년	수리업	
10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년
8년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년
20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년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 ~ 상한)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종분류
1	4년 (3년 ~ 5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 ~ 10년]를 적용한다.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2	5년 (4년 ~ 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 ~ 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 ·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 ·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년 ~ 12년]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 ~ 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 ~ 10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이나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 ~ 상한]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2	5년 [4년 ~ 6년]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 ~ 10년]를 적용한다.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이나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 ~ 상한]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3	6년 (5년 ~ 7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 ~ 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 ~ 12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61. 우편 및 통신업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 ~ 상한]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4	8년 (6년 ~ 10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 ~ 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 · 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구분 1[3년 ~ 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 ~ 12년]를 적용한다.
		건설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1. 종합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수리업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이나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 ~ 상한]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5	10년 [8년 ~ 12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종 수생파종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년 ~ 6년]를 적용한다.
		광업	06. 금속광업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 ~ 6년]를 적용한다.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지원서비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년 ~ 6년]를 적용한다.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구분 4[6년 ~ 10년]를 적용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 ~ 6년]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리동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 ~ 10년]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10년 [8년 ~ 12년]		

▣ 참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 ~ 상한]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6	12년 (9년 ~ 15년)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 ~ 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7	14년 (11년 ~ 17년)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 · 토탄의 응집 유 · 무연탄 및 기타 유 · 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 ~ 6년)를 적용한다.
8	16년 (12년 ~ 20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	20년 (15년 ~ 25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사업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이나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11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즉시상각 대상자산 <input checked="" type="radio"/> (원칙)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 <input checked="" type="radio"/> (예외)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즉시상각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 - 어구(어선용구 포함),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등 - 공구(금형을 포함)  - 공구	<input type="checkbox"/> 즉시상각 대상자산 <input checked="" type="radio"/> (좌 동) <input checked="" type="radio"/> 금형을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제외 - (좌 동) - 공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서면-2021-법인-4554 2021.07.20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